

「국고금 취급규정」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국고수납대리점”이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 영업점중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영업점을 말한다.</p> <p>3. “국고금수납점”이란 제2호의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(이하 “중앙회 등”이라 한다)이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그 회원조합, 회원금고, 회원저축은행 및 「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」 제9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중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(이하 “회원조합 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4. “취급점”이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(이하 “국고증권실”이라 한다) 및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(이하 “지역본부”라 한다)와 국고대리점을 말한다.</p> <p>5. “통할점”이란 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취급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국고금 취급사무를 통할하고 수입금 계리 업무를 취급하는 국고증권실 및 지역본부를 말한다.</p> <p>6. “본부”란 국고금 지출사무의 취급,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의 처리 및 운영 등 국고금 취급사무를 총괄하는 국고증권실을 말한다.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국고수납대리점”이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(이하 “중앙회 등”이라 한다) 영업점중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영업점을 말한다.</p> <p>3. “국고금수납점”이란 제2호의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중앙회 등이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그 회원조합, 회원금고, 회원저축은행 및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」 제9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중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(이하 “회원조합 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4. “취급점”이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(이하 “금융업무실”이라 한다) 및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(이하 “지역본부”라 한다)와 국고대리점을 말한다.</p> <p>5. “통할점”이란 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취급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국고금 취급사무를 통할하고 수입금 계리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업무실 및 지역본부를 말한다.</p> <p>6. “본부”란 국고금 지출사무의 취급,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의 처리 및 운영 등 국고금 취급사무를 총괄하는 금융업무실을 말한다.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“국고금납부대행기관”이란 「국세징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말한다.</p>	<p>용어 정비</p> <p>”</p> <p>”</p> <p>명칭 변경</p> <p>”</p> <p>”</p> <p>국고금납부대행기관 정의 명시</p>
<p>제3조의2(납부수단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이 아닌 자가 한국은행 취급점에 납부하는 경우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정한다. 다만, 국고증권실장이 전시, 전산망 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3조의2(납부수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이 아닌 자가 한국은행 취급점에 납부하는 경우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정한다. 다만, 금융업무실장이 전시, 전산망 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명칭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4조(계약의 체결 및 해지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계약체결·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장(이하 “국고증권실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6조(국고금수납점의 설치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중앙회 등의 회원조합이나 회원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중앙회 등의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1조(제재) ①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고증권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및 국고대리점에 주의환기, 국고금 수납액의 조기회수, 집중지연이자 부과, 국고대리점 폐지 또는 설치 제한의 제재를 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한국은행은 결제모집 또는 금융기관이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주의환기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계약의 체결 및 해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계약체결·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장(이하 “금융업무실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6조(국고금수납점의 설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중앙회 등의 산하 회원조합 등이 아닌 금융기관이 중앙회 등의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1조(제재) ①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및 국고대리점에 주의환기, 국고금 수납액의 조기회수, 집중지연이자 부과, 국고대리점 폐지 또는 설치 제한의 제재를 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한국은행은 금융기관(결제모집을 포함한다)이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- 명칭 변경</p> <p>- 용어 정비</p> <p>- 명칭 변경</p> <p>-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사유 추가</p>
<p>제15조(국고금의 지급) ① 본부는 기획재정부장관, 중앙관서의 장, 수입징수관, 지출관, 출납공무원 등(이하 이 장에서 “지출관 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디지털예산·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(우체국, 금융결제원을 포함한다)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채권자 등의 예금계좌 등으로의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계계정 및 계좌에서 국고금을 지급(환급금 및 반환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이체 등의 절차를 밟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6조(지급자금의 결제) 본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정부당좌예금에서 출금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(회원조합 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중앙회 등을 말한다)의 당좌예금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우체국예탁금계좌에 대체의 절차를 밟는다.</p>	<p>제15조(국고금의 지급) ① 본부는 기획재정부장관, 중앙관서의 장, 수입징수관, 지출관, 출납공무원 등(이하 이 장에서 “지출관 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디지털예산·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국고금수납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채권자 등의 예금계좌 등으로의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계계정 및 계좌에서 국고금을 지급(환급금 및 반환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이체 등의 절차를 밟는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지급자금의 결제) 본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정부당좌예금에서 출금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(중앙회 등 산하 회원조합 등의 계좌에 입금이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 등을 말한다)의 당좌예금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우체국예탁금계좌에 대체의 절차를 밟는다.</p>	<p>- 용어 정비</p> <p>- 계좌입금 처리방식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8조(취급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에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업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부사장은 한국은행 <u>전산정보국장</u>(이하 “<u>전산정보국장</u>”이라 한다)과 협의를 하고 미리 <u>국고증권실장</u>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9조(참가기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과 국고전산망 이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취급은 국고급 수납업무의 안정성이 검증된 기관에 한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20조(운영시간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국고증권실장</u>은 한국은행의 근무시간 변경, 각 관서의 장의 요청, 디지털예산·회계시스템, 한국은행금융결제망, 국고전산망 또는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8조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2항의 업무 처리시간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<u>국고증권실장</u>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18조(취급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에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업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부사장은 한국은행 <u>IT전략국장</u>(이하 “<u>IT전략국장</u>”이라 한다)과 협의를 하고 미리 <u>금융업무실장</u>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9조(참가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과 국고전산망 이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취급은 국고급 수납업무의 안정성이 검증된 참가기관(회원조합 등도 포함한다)으로 한정한다.</u>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운영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금융업무실장</u>은 한국은행의 근무시간 변경, 각 관서의 장의 요청, 디지털예산·회계시스템, 한국은행금융결제망, 국고전산망 또는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8조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2항의 업무 처리시간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<u>금융업무실장</u>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- 명칭 변경</p> <p>- 단서 조항은 제3항으로 이동</p> <p>- 회원조합 등도 국고급 지급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용어 정비</p> <p>- 항 내림</p> <p>- 명칭변경</p> <p>- ”</p>
<p>제23조(표준화) <u>전산정보국장</u>은 국고전산망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참가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장비와 통신방식, 송수신 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(국고전산망의 유지·관리) 국고전산망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유지·관리업무는 <u>전산정보국장</u>이 담당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3조(표준화) <u>IT전략국장</u>은 국고전산망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참가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장비와 통신방식, 송수신 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(국고전산망의 유지·관리) 국고전산망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유지·관리업무는 <u>IT전략국장</u>이 담당한다.</p> <p><u>제28조(국고급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의 적용) 국고급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「은행법」 제2조에 의한 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인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제20조제2항, 제24조를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	<p>- ”</p> <p>- ”</p> <p>- 은행이 회원조합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운영시간이나 참가기관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8조(위임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국고증권실장</u>이 정한다. 다만, 제19조제3항, 제23조 및 제25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<u>전산정보국장</u>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신 설 ></u></p>	<p>제29조(위임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금융업무실장</u>이 정한다. 다만, 제19조제4항, 제23조 및 제25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<u>IT전략국장</u>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<2023. 8. 14.></u></p> <p><u>이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- 조 내림, 명칭 및 인용조문 변경</p> <p>- 부칙 신설</p>